현금IC카드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시행일: 2017. 4. 21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현금 IC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 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현금 IC 카드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 3 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현금 IC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PIN 번호나 출금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제13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현금 IC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 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현금 IC 카드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 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현금 IC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PIN 번호나 출금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조 명칭 변경 (표준약관 적용) 호 삭제에 따른 호 체상(표준약관 적용)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적용